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21439
등록일자	2022. 5. 6.
결재일자	2022. 5. 6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복지정책 팀장	복지정책 과장			
		전결 2022. 5. 6.			
유선웅	김미화	윤명훈			
협조자					

『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』 추진계획



인천광역시서구
[복 지 정 책 과]

업 무 요 지

제 목

『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』 추진 계획

■ 추진배경 및 목적

-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

■ 추진근거
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 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5조(사회서비스 제공계획)
- 「청년기본법」 제21조(청년복지증진)

■ 추진개요

- 사업기간: 2022. 5. 6. ~ 12. 31. ('22년 신규사업)
- 사업규모: 서구 152명
- 사 업 비: 114,868천원 * 국비80,408천원, 시비17,230천원, 군구비17,230천원
- 서비스 비용 지급: (위탁업무 수행기관) 한국사회보장정보원
-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집기간: 2022년 5월
- 제공대상
 - 서비스 대상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, 소득기준 없음
 - 우선지원: (1순위) 자립준비청년 /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
- 서비스내용 및 이용기간
 - 3개월간 주 1회씩 총 10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
 - 재판정 3회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
- 서비스가격(택1): A형 월24만원 / B형 월28만원
- 홍보방법
 - (온라인) 구·동 및 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
 - (오프라인) 동 게시판 및 전광판 등

■ 군·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추진 계획

- 지표명: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산 집행률
- 추진목표: 예산집행률(90%) 달성

『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』 추진 계획

청년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임

I 추진배경

- 코로나19 우울감,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필요
- 청년층이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·경제적 장벽이 있어,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 지원을 위해 필요

II 추진근거
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사회서비스 제공계획)
- 「청년기본법」 제21조(청년 복지증진)

III 추진개요

- 사업목적
 -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
 -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- 사업기간: '22.5.6. ~ '22.12.31. ('22년 신규사업)
- 사업방식: 자치단체 경상보조 * 균특 70%, 시비 15%, 군구비 15%

□ 사업규모: 서구 152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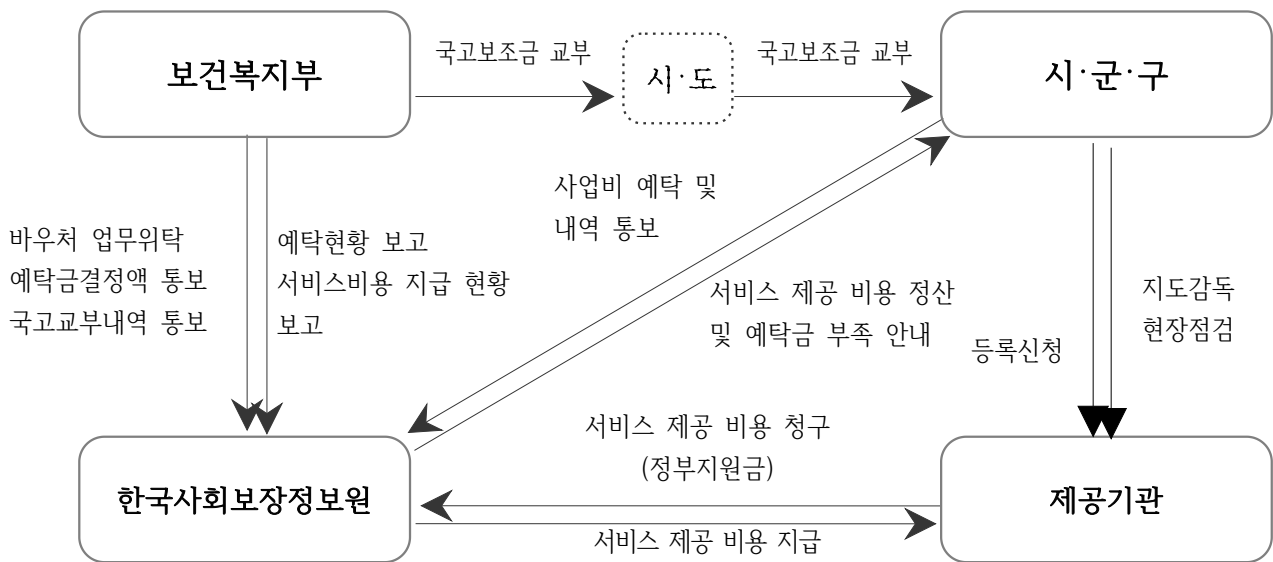
* 252천원(B형 월 지원금)*3월(서비스기간)*152명(인원) ≙ 114,912천원

□ 사업비: 114,868천원 * 국비80,408천원, 시비17,230천원, 군구비17,230천원

□ 서비스 비용 지급

○ 위탁업무 수행기관: 한국사회보장정보원

□ 사업 흐름도



□ 사업현황

○ 제공서비스: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

○ 제공기관: 5월 신규 제공기관 모집

□ 제공대상

○ 서비스 대상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, 소득기준 없음

○ 우선지원: (1순위) 자립준비청년 /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

□ 제공체계: 사회서비스 이용권(전자바우처)을 수요자에게 제공, 해당 서비스 금액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며, 수요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 바우처 결제



IV

세부 추진사항

□ 모집기간: 2022. 5. 12.(목) ~ 5. 20.(금)

□ 서비스 제공

○ 서비스대상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소득기준 없음

○ 신청권자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
○ 우선 선정 대상

- 1순위: 자립준비청년 * 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

- 2순위: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

- 3순위: 일반 청년

※ (동일순위)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우선

○ 서비스내용: 3개월간 주 1회씩 총 10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

- 재판정 3회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

-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

서비스종류	서비스내용	제공시간	제공횟수
사전·사후검사	·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(MMPI-2 ,BDI 등 검사도구 활용)	90분	사전·사후 각 1회
서비스제공 (1:1 원칙)	·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- 심리·정서적 문제(우울,불안,강박 등)에 대한 개입, 예방 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-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	회당 50분	주1회 (월4회)
종결상담	·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(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 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)	-	1회

○ 서비스가격: 월 24만원 또는 28만원 선택가능(본인부담금 10%)

- 제공인력 수당은 서비스 가격의 65%이상 지급 원칙

-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(전액 지원)

구 분	24만원(A형)	28만원(B형)
정부지원금(월)	216,000원	252,000원
본인부담금(월)	24,000원	28,000원
제공인력 수당(회)	39,000원	45,500원

□ 홍보방법

○ 온라인

- 구·동 홈페이지 신문 보도자료 등
-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

○ 오프라인: 동 게시판 및 전광판 등

□ 제공기관 등록·모집

○ 등록기준

- 시설기준: 상담실 33㎡

* 단,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,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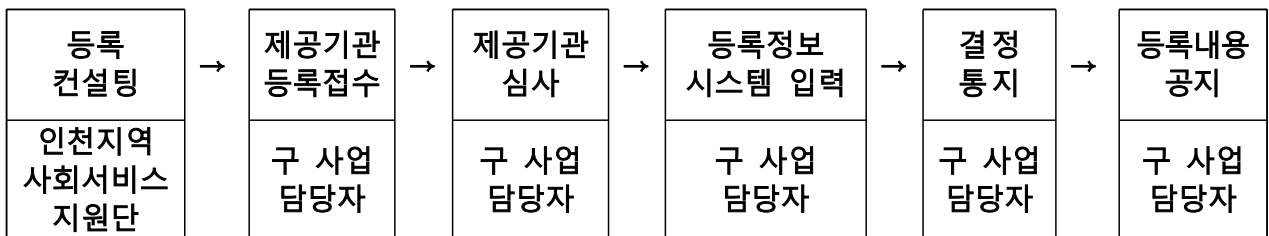
- 인력기준

구 분	A형	B형	비 고
제공기관의 장	1명	1명	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 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
제공인력	2명	1명	

* 서비스 제공 단가 유형(A형, B형)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

- (A형)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·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2년, 석사1년)이 있는 자
- (B형)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급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·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4년, 석사3년, 박사1년)이 있는 자
-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

○ 등록절차



□ 제공기관 운영실태 현장점검

○ 점검일정: 2022년 하반기(예정)

○ 수검기관: 서비스 제공기관

○ 점검기관: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합동점검 및 구 자체점검

V**군·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추진 계획**

- 지표명: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산 집행률
- 추진목표: 예산 집행률(90%) 달성
- 연간 추진전략
 - 중도포기자, 미이용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 등 이용자 수 관리를 통해 신규 모집인원에 반영
 - 예산집행 추이를 확인하여 이용자 수 및 모집 적기 추진
 -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자 관리 및 홍보 철저